

입찰/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입찰공고번호	한강총무팀 제2026-01호	일 자	2026. 04. 07
용역명	한강성심병원 각종 필터 교체공사		

본인은 위의 용역 건에 대하여 한강성심병원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현장설명회 및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상 호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서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E - mail 주 소 :

2026년 월 일

한강성심병원장 귀하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한강성심병원 각종 필터 교체공사
제안업체	
사업기간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제안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한강성심병원장 귀하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자기자본/총자본			
9. 유동자산/유동부채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주요업무 수행내용	발주처	비고

- ※ 1. 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발전기금 기부자 명판 제작.설치 완료한 건수에 한하여 모두 기재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확인서 미 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한강성심병원 입찰서 작성 요령

■ 입찰서 작성

1. 입찰서는 **본원에서 지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항목에 대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한다.
2.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주소, 상호(혹은 법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한다.
3.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고 정정** 또는 말소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입찰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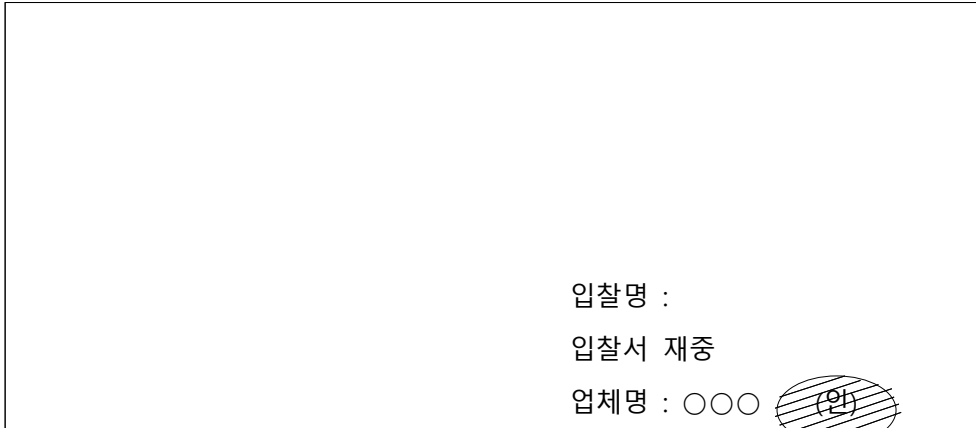
1. 입찰서는 본원 소정양식의 입찰서로 하며 1인(업체)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뒷면 상.중.하단 3곳에 각각 인감 날인**하여 제출, 단 병원에서 지급한 봉투일 경우에는 봉투 앞면 입찰 업체란에 업체명을 기입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입찰의 무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입찰참가신청 시 신고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의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 참관인과 입찰진행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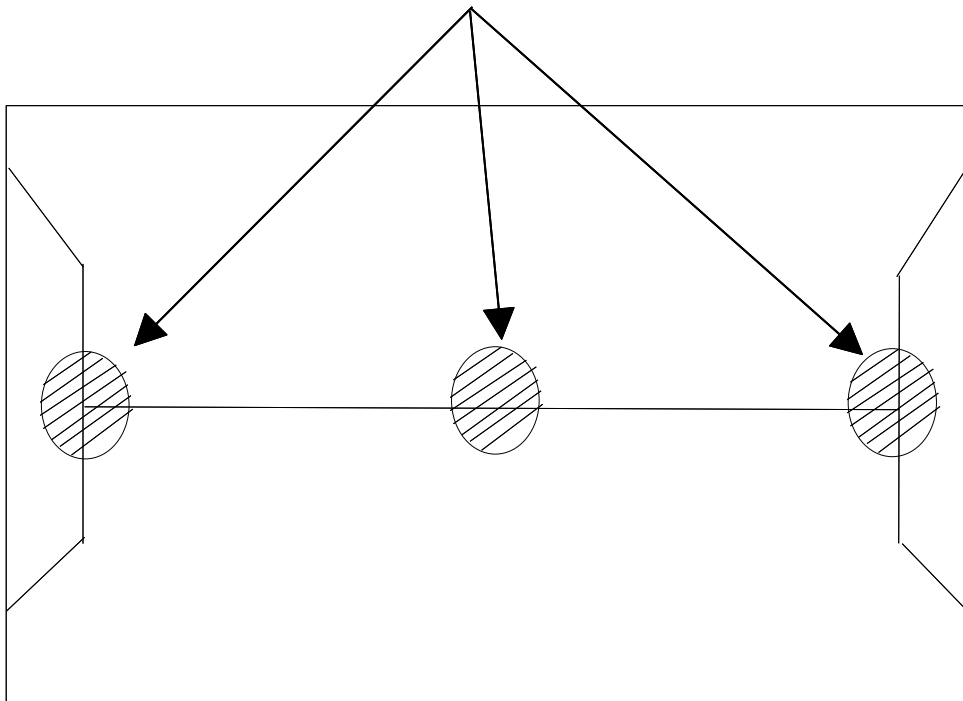
입찰서 밀봉 방법 (대봉투 혹은 일반봉투)

- 앞 면



- 뒷 면

날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강성심병원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 진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월 일

■ 입찰자

상 호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필터 납품 및 교체 시방서



2026. 04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기관실



필터 납품 및 교체 시방서

1. 필터 납품 및 교체 일반조건

가. 용역명 : 필터 납품 및 교체

나. 장소 : 본관, 도현연구센터, 신관 등.

1) 필터교체내역

구분	설치수량(EA)	청정도 측정	비고
헤파필터	123	1회	폐기물 처리
미듐필터	89	-	폐기물 처리
프리필터	202	-	폐기물 처리
데미스터필터	20	-	폐기물 처리
카본필터	228	-	폐기물 처리

※ 헤파, 데미스터, 카본필터 년1회 교체하되 각 실별 교체주기에 따라 시행 함.

※ 미듐, 프리필터 차압에따라 수시 교체, 발주처 실무부서와 협의 후 납품.

2. FILTER 제작특기사항

2-1. HEPA FILTER(다풍량)

가. 자재

- 1) 필터의 내장은 AL 세퍼레이터(Separator) 타입으로 제작한다.
- 2) FRAME의 소재는 AL로 하고 압출 1.3T이상으로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 3) 필터는 610*610*150 기준 처리풍량 27CMM, 산수 75산 이상, 초기차압 25.4mmAq, 말기차압 50.8mmAq, 효율 D.O.P 99.97% 이상 포집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4) FILTER 의 여재는 고밀도 GLASS FIBER 로 한다.
- 5) 접착제는 폴리우레탄으로 접착한다.
- 6) GASKET은 NEO-PRENE 재질로서 AIR IN 방향에 부착하여 풍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 7) Filter Media는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세균의 성장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된 여재이어야 한다

나. 기술

- 1) FILTER 상단에는 FILTER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명, 식별번호, 측정결과를 기록한 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MEDIA 는 DUST 의 재 비산이 없어야 한다.
- 3) FILTER UNIT 에 장착, 탈착이 용이하고 취급이 편리하여야 한다.
- 4) HEPA FILTER의 성능은 D.O.P TEST 99.97%(0.3 μ m : 계수법)이상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작상의 점검 및 안전성을 위하여 실무부서에서 제조자의 제품 생산 과정 입회검사를 요구할 시 제작 과정 및 현장확인(공장)에 협조하여야 한다.

2-2. MEDIUM FILTER

가. 자재 및 기술

- 1) 프레임은 Galvanize Steel로 두께는 0.5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2) 필터의 여재 모양은 Mini Plated Type 으로 하고, MEDIA의 접착은 핫멜트로 접착 하여야 하고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가장자리 실링처리 하여야 한다.
- 3) 여재 재질은 Glass Fiber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절곡수는 100산 이상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 4) 필터 압력손실은 정격 풍량 56CMM/28CMM에서 초기 15mmAq, 말기 30mmAq 이어야 한다.
- 5) 필터 효율은 ASHRAE STANDARD 52.1에 따른 비색법 80~85%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 6) 필터 여재는 반드시 난연성제품으로 사용해야한다

2-3. PRE FILTER

가. 자재 및 기술

- 1) 프레임은 알루미늄 1.0t 이상으로 제작하고, 마무리 처리는 리벳 3.2 ϕ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공기유입 면과 유출면에 변형을 방지할수 있는 지지강도가 고려된 보강망과 보강막대(지름3mm)를 Air in/out 양쪽 방향으로 설치한다.
- 2) 풍속 2.5m/s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 3) 필터 압력손실은 초기 7mmAq 이하이어야 한다.
- 4) 필터 효율은 ASHRAE STANDARD 52.1에 따른 중량법 80~85%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2-4. CARBON FILTER

가. 자재 및 기술

- 1) 프레임은 ABS 프레임을 사용한다.
- 2) 효율은 향균도 95% 이상(균감소율), 탈취율 85% 이상(가스검지관법) 이어야 한다.
- 3) 정압은 정격풍량 56CMM일 때 초기차압이 12mmAq 이며 말기차압 24mmAq 이하 이어야 한다.
- 4) 활성탄의 입도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 5) 요오드 흡착 성능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2-5. DEMISTER FILTER

가. 자재 및 기술

- 1) SUS Media 재질로서 Media in/out 쪽은 정압에 버틸 수 있도록, SUS 직망이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 2) 프레임은 SUS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고, 프레임의 두께는 1T 이상이어야하고 마무리 처리는 3.2 ϕ 리벳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Media 중앙에는 필터의 두께가 형성되도록 철사 채결 마감에 있어야 한다.
- 4) Media 면이 프레임에 접착이 잘 되어 Media의 유동이 없어야 한다.
- 5) 초기차압이 5mmAq 이며 말기차압 20mmAq 이하 이어야 한다.

3. 필터 납품 및 교체

가. 납품

- 1) Filter는 공인 국제표준규격인 ASHRAE, MIL 등의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2) 납품자는 Filter 제작 前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의 시설을 방문하여 실측 및 필터 타입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구매리스트와 규격에서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前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미확인으로 발생된 규격 미달품은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3) 모든 제작시험이 완료되고 납품할 시점이 되면 실무부서에 통보하여 납품에 따른 일정을 상호 협의한다.
- 4) Filter는 습기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주머니에 담아 밀봉한 후 취급 및 저장중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종이 상자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5) Filter 납품시 시방서와 동일 또는 그이상의 성능이 있는 Filter를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제품이 시방서와 동일하지 아닐 경우 전량 교환하여야 함).
- 6) 납품되는 필터는 규격 별 랜덤으로 개봉하여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며 감독원의 승인 후 납품한다.
- 7) 지정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포장지 표면에 제품의 사양을 기입한 규격표를 개별로 부착하여 저장, 관리에 편하도록 하고, 규격별 수량을 육안으로 구별되게 적재한다.
- 8) 납품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소요 자재 및 부품은 K.S품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이 보증된 자재를 사용 한다
- 10) Filter의 Media는 난연성이어야 한다.

나. 교체

- 1) 내역수량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장소가 없도록 한다.
- 2) 필터 교체작업 감독원은 발주처 실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 3) 교체작업 시 내역이 현장과 불일치 할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 4) Filter 교체시 필터면 상단(유니트내부)의 Baffle Plate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Frame은 변형 및 찌그러짐의 손상 및 오염이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 6) 폐기되는 필터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감독원 승인 후 반출한다.
- 7) HEPA Filter, PRE Filter 등 필터 교체 후 발생 된 폐필터는 먼지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고, 관련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한 후 폐기물 처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정도 측정

- 1) HEPA Filter는 교체 후 청정도테스트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 Test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각 실별 HEPA FILTER 청정도 REPORT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역별 특이내용


장 소	내 용	비 고
수술실	공조기, 배기필터(카본) 포함	헤파,미둠,프리,카본
화상치료실(구 ANGIO)	헤파필터 교체여부 확인	헤파
중앙공급실	공조기 필터 포함	헤파,미둠,프리
진단검사의학과(구 MICU)	음압실 필터(겔타입), 향온항습기 필터 불포함	헤파,미둠,프리
본관 8병동	음, 양압실 필터(겔타입), 향온항습기 필터 포함	헤파,미둠,프리
GMP	공조기 필터 포함	헤파,미둠,프리
동물실험실	공조기, 배기필터유닛 필터 포함	헤파,미둠,프리,카본,데미스터
BICU	음, 양압실, 화상치료실 필터(겔타입) 포함	헤파,미둠,프리
신관 3병동	공조기 필터 불포함	미둠,프리

4. 특이사항

- 가. 배부한 공내역서 수량이 현장과 일치 하는지 확인 후 견적하여야 하며 내역수량 외 추가로 발생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추가 생산하여 보충한다. (증액 할 수 없음)
- 나. 작업복은 레벨D를 착용 하여야하며 구역별로 중복하여 착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별하여 착용한다.
(발주처 미 지급)
- 다. 본 병원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대만 작업가능 하므로 사전에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 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 마. 환자이동이 불가한 구역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충분히 보양 후 작업에 임한다.
- 바. 교체 작업 중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 하고 실무자와 협의 후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 한다.

5. 안전에 관한 사항

- 가. 수급자는 작업 중에 있는 시설물 및 재산 또는 인명의 손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교체기간 중 내·외부고객(환자 및 보호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며 교체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작업시행 중 인명 또는 발주자 재산 및 제3자에게 수급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라. 수급자는 교체작업 중 화재안전 등 비상시에 적용하는 규정 또는 규칙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터 납품 및 교체 현장설명서

== = 목 차 = = =

1. 입찰 안내서
2. 입찰 유의서
3. 교체 시방서
4. 물품공급 및 교체계약서(안)

2026. 04.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입찰 유 의 서

▣ 입찰건명 : 필터 납품 및 교체 업체 선정

▣ 물품사양 및 교체물량 : 시방서 및 입찰품목명세 참고할 것

헤파필터 납품 및 교체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및 최저가총액입찰(V.A.T포함) 방식으로 진행 함.
2. 본 입찰은 직접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3.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써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협상자로 결정 함. (단, 입찰시 내역서 제출)
4. 본 입찰은 물품에 대한 납품 및 교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함.
5. 입찰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여야 함.(단, 원미만 절사)
6.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기관실로부터 물품사양, 입찰품목명세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은 총투찰금액의 5%이상 보증증권으로 납부함.
8. 계약보증금은 계약전까지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을 보증증권으로 납부함.
9.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하자보수증권으로 납부한다.
10.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음.
 - ① 계약된 물품이 제작시방 사양과 상이할 경우.
 - ② 수급자의 특별한 사정없이 과업(납품 및 교체)을 지연하여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③ “수급자”가 본 계약 이행에 부적합 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11. 물품의 납품 및 교체 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됨.
12. 물품은 기관실 실무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위 검수인과 사용부서에서 판정하며 수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함.
13. 물품의 대금은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의 지불시기 및 방법에 따라야 함.
14. 기타 입찰 시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계약담당과 입찰진행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5. 입찰과 관련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6. 4. .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필터 총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설 치 수 량	주 문 수 량	비 고
HEPA FILTER-다풍	305*305*90	EA	9	9	
"	610*1220*150	EA	56	56	AL FRAME
"	610*305*150	EA	2	2	
"	610*305*90	EA	25	25	
"	610*610*150	EA	8	8	AL FRAME
	610*610*292	EA	9	9	AL FRAME
	610*610*90	EA	12	11	GEL TYPE
	610*762*90	EA	2	1	GEL TYPE
합 계			123	121	
MIDDUM FILTER	594*287*75	EA	28	113	Glass Fiber
	594*594*100	EA	1	1	항온항습기
	594*594*75	EA	59	231	Glass Fiber
	746*594*100	EA	1	2	Glass Fiber
합 계			89	347	
PRE FILTER	230*540*10	EA	3	0	
	230*640*10	EA	2	4	
	415*770*20	EA	4	8	POLYESTER
	420*805*20	EA	4	8	POLYESTER
	430*740*10	EA	16	32	
	573*465*10	EA	1	2	
	594*287*20	EA	24	24	무전원정정식
	594*287*25	EA	4	20	POLYESTER
	594*287*50	EA	4	8	POLY + STS
	594*594*20	EA	55	55	무전원정정식
	594*594*25	EA	4	20	POLYESTER
	594*594*50	EA	19	32	POLY + STS
	610*305*25	EA	4	8	
	610*610*20	EA	9	10	

	610*610*50	EA	1	1	
	630*740*10	EA	4	8	
	685*520*20	EA	6	12	
	685*665*20	EA	3	6	
	700*290*20	EA	3	3	부직포
	700*650*20	EA	18	18	부직포
	735*430*10	EA	12	24	
	746*594*50	EA	1	2	
	780*635*20	EA	1	2	
합 계			202	307	
데미스터	594*287*50	EA	4	4	STS
"	594*594*50	EA	16	16	STS
합 계			20	20	
카본	450*600*50	EA	227	227	EXPOL
"	610*610*50	EA	1	1	수술실 소독배기팬
합 계			228	228	

안전보건관리 유의서

1.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가. 공통사항

- 1) 본 공사는 “한강성심병원 각종 필터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2) 수급자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공정 등에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수급자는 발주처의 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시정 하여야 한다.
- 4) 화기를 취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 하여야 한다.
- 5) 수급자는 본 공사 시작 전 공정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한다.
- 6)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단, 증빙하지 못하거나, 용도외 사용한 내역은 정산하여 감 할 수 있다.
- 7)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1시간이상의 안전교육(안전보건,소방)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유의사항

- 1) 중량물 반입위한 크레인 사용 시 안전관리원 사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한다.
- 2) 1미터 이상 높이에서 사용하는 사다리에는 아웃트 리거를 반드시 부착하여 사용한다.
- 3) 공사 종료 시 까지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한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평가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따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본원 내 작업을 말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상기 기준에 충족 시 모두 적용 된다.

· 평가제외 대상

- ① 안전보건 관련 기술용역 :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소방점검 등
※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은 해당
- ② 본원 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도급·용역·위탁 업무 등
- ③ 본원에 방문하여 단순 납품만 실시하는 업체
※ 단, 납품 후 추가적인 업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평가대상
예시1) 원내 의료용 가스를 납품하고 교체 작업까지 실시하는 경우
예시2) 원내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설치 작업까지 실시하는 경우
예시3) 원내 사용하는 기계기구 고장 방문하여 수리하는 경우
예시4) 본원 내 CCTV를 납품하고 설치 작업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3. 평가방법

평가방법	대 상	제출서류
정식평가	입찰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약식평가	비입찰	[붙임4]안전보건수준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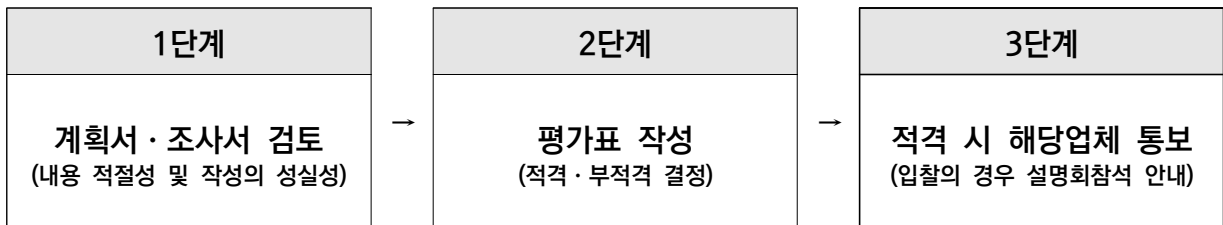
4. 평가절차

- 계약에 따른 평가 절차

입찰계약	비입찰계약
<p>본원 입찰 공고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공지)</p>	<p>계획서 제출 요청</p>
<p>사업(현장)설명회</p>	<p>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붙임 4]안전보건수준조사서 제출</p>
<p>투찰</p>	<p>평가결과(적격·부적격) 통보</p>
<p>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p>	<p>도급·용역·위탁 진행</p>
<p>개찰 및 낙찰자 선정</p>	
<p>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p>	

- 계약서에 따라 자동 연장이 되는 도급·용역·위탁은 연장 이전 재평가 실시
-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는 도급·용역·위탁 경우 매년 초 재평가 실시
- 본원 양식 외 안전보건계획서 제출도 가능하며 단, 계획서에는 [붙임 1]안전 보건 순준 평가표 상 평가기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 필요
- 본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재단에서 실시하는 입찰·계약의 경우 평가절차 제외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세부평가 절차



5. 평가기준

· 작업별 적격기준

작업구분	도급·용역·위탁 내용	적격기준
고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관리, 원내건설공사 · 건설기계 운반(의료기기 이동 등) · 밀폐공간 출입(물탱크 청소 등) ·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재작업, 화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최우수 · 부적격 : 최우수 미만 등급
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내 상주하는 협력사 전체 ·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중량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우수 이상 · 부적격 : 보통 이하 등급
일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인력 파견업체 전체 · 작업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보통 이상 · 부적격 : 주의 이하 등급
저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업 이상의 도급·용역·위탁 내용을 제외한 재해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 주의 이상 · 부적격 : 불량 등급

·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
최우수	80점 이상~10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 철저히 이행 가능
우수	60점 이상~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위험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경험이 있으며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가능
보통	50점 이상~6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작업에 대해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지식이 다소 부족하며 위험작업 이상 작업 시 재해발생 우려
주의	40점 이상~5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며 일반작업 이상 작업 시 재해발생 우려
불량	4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불가 ·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지식이 매우 낮으며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성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성성	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성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총 점		100	

□ 평가결과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자	부서명	(서명)
	적격[] 부적격[]		이름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배점 기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1	[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
중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 관련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하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2	[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내부적으로 운영한다. 위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 ex) 매월 안전보건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
중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
하	안전보건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3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요인관리]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의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 관련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중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 관련 일부 담당자가 누락되어 있다.
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4	[안전보건관리체계-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근로자 대피 계획 수립하였다.
중	비상연락망 구축이 부실하여 신속대응이 어려우며, 대피 계획이 누락되어있다.
하	비상연락망 및 근로자 대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1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요인관리]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관련 평가시기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중	위험성평가 운영 및 개선계획 수립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하	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2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
중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또는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 일부가 누락되었다.
하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3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병원관련 실적이 있으며, 해당 작업 및 안전보건관련 인력이 적정하다
중	병원관련 실적은 없지만 타 업종 업무 실적이 있으며, 인력이 적정하다.
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4	[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 사항 포함되어 있다.
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절차에 근로자 작업즉시중지가 누락되어 있다.
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즉시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 분	내 용			금 액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위험성개선				
		기 타				
	합 계					
	인력 운영	구 분	이 름	직 급	자격사항	비 고
장비 운영	장비명	용 도	수 량	관리계획	비 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 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정기교육	월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시의교육	8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교육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의견수렴계획 (근로자 의견청취)	구 분	수렴주기	수렴내용	담당자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위험성평가	최초 사업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의견청취	
	수시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개선	평가 시	위험성평가 후 개선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시행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에 관한 기준

2. 평가대상

다음 각 항의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도급, 용역,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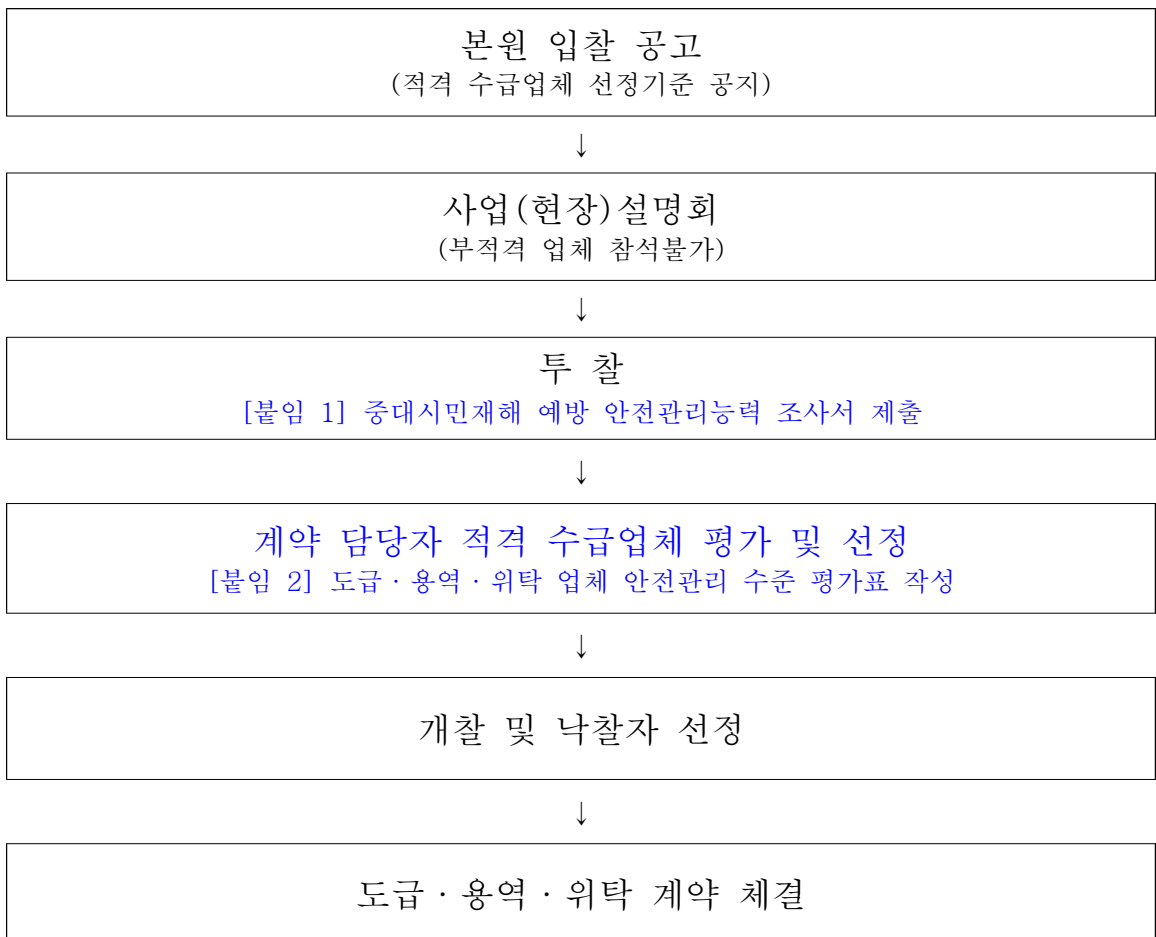
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중대시민재해)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동력차·객차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승합자동차
 - 4)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5)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라. 원내 공사 및 작업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나. 평가기준

구분	기준	비고
적격	평가결과 총점이 80 이상	[붙임 3] 평가표 배점기준
부적격	평가결과 총점이 80 미만	

다. 평가 시 유의사항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2)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동연장일 경우 매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제8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귀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명		전년도매출액	
사업장규모	50인 미만[] 50인 이상~500인 미만[] 500인 이상[]		
소재지			

□ 인력현황

구분	담당	이름	직급(보직)	보유자격
본사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시설관리			
	교육관리			
현장				

예산현황 (본원 도급범위에서 한정하여 작성)

구 분	세부내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지침 및 매뉴얼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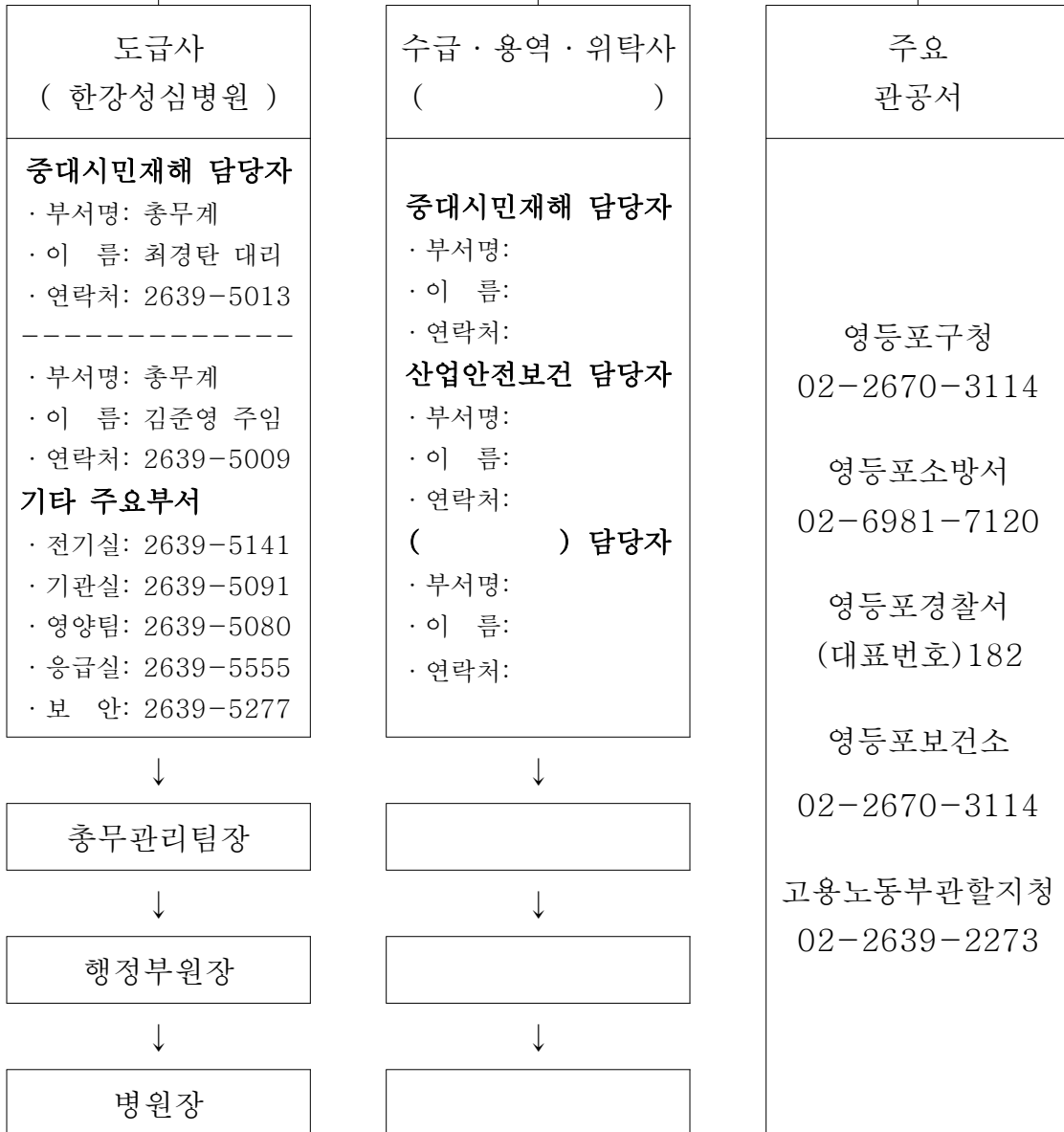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보관형태	비 고

□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처

목격자 또는 담당자
중대시민재해 발생 인지



현장관리자 : (연락처)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시)

※ 위의 각종 사항은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

□ 업체명 : (주)원이앤에스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안전인력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예산현황	- 안전 예산 현황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5	
안전관리규정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15	
지침 및 매뉴얼	- 법정 보유 지침 및 매뉴얼	15	
재해대응 체계현황	- 재해발생 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1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발생 건수 없을시 중대재해 대응체계 확인 대체)	10	
총 점		100	

안전관리 수준평가표 배점 기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1	[안전전문인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및 각 유관부서를 통해 철저한 대응 가능
중	중대시민재해 담당자는 없지만 유관부서를 통해 대응 가능
하	중대시민재해 담당자가 없으며, 발생시 대응이 어려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2	[예산현황]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중	교육 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음
하	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인이 어려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3	[안전관리규정]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안전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
중	안전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기 어려움
하	안전관리규정 없음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4	[지침 및 매뉴얼] 법정 보유 지침 및 매뉴얼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각종 지침과 매뉴얼이 잘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보기 쉬움
중	각종 지침과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보기 어려움
하	각종 지침 또는 매뉴얼이 없음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5	[재해대응체계 현황] 보고 절차도,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	20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중	중대시민재해 담당자가 없으며 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하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6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3년간 교육 및 훈련실적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법적 교육 외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			
중	법적 교육은 철저히 실시하지만 그 외 추가적인 교육 미실시			
하	교육실시 미흡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행정처분 정도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최근 3개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 없음			
중	최근 3개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이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음			
하	최근 3개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 확인			